

The background features a repeating pattern of stylized white waves. On the left, two red lanterns hang vertically. On the right, a branch of cherry blossoms with red and pink flowers extends across the top. Another red lantern hangs on the right side.

IP NEWSLETTER

2020년 1월 발행통권 제211 기

뉴스요약

1. 외상투자법 시행규칙 실행: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 강도 강화
2. <반독점법> 대폭 개정: 인터넷 관련 내용 새로 추가

외상투자법 시행규칙 실행: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 강도 강화

2019년 3월 15일,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 (아래 외상투자법이라 함)이 통과되었다. 이는 중국 최초의 외상투자 분야의 기초적 법률이다. 해당 법은 이미 2020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었다. 법률은 내·외자기업의 동등대우를 명확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 진입단계에서의 내국민대우 및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립하였다. 또한 외국투자자들이 보편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 양도 등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하였다.

<시행규칙>은 외상투자법의 보조법규로서 외상투자법의 입법 원칙과 취지를 엄격히 관철하고, 외상투자의 기초를 더욱 추진시키고 보호하며, 제도의 활용성을 증가시키고, 법률의 효과적인 실행을 보장한다.

1. 외상투자를 격려하고 추진

<시행규칙>에서는 외상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외상투자 관리를 규범화하고, 외상투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더욱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할 것을 제기하였다. 이와 동시에, 중국의 자연인과 외국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 외상투자 진입의 네거티브 리스트 제정 및 조정 절차, 외상투자기업이 중국내에서의 투자에 대한 법률적용 등 문제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였다.

2. 외상투자 추진에 대한 구체적 조치를 세분화

<시행규칙>에서는 외상투자기업은 국가에서 기업 발전을 지지하는 관련 정책을 평등하게 적용할 수 있고, 법에 따라 평등하게 기준의 제정, 정부 구매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외상투자 서비스 시스템을 완비하게 설립할 것을 규정하였다.

3. 외상투자에 대한 보호력을 강화

<시행규칙>에서는 외국 투자자가 투자한 것에 대한 징수보상, 행정수단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외국투자자와 외상투자기업에게 기술양도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 영업비밀 보호, 외상투자기업의 신고 업무 시스템 등에 대하여 세분화하였고 외상투자법 제 25 조에서 말하는 “정책에 대한 약정”의 구체적 의미와 요구를 명확히 하였다.

4. 외상투자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

<시행규칙>에서는 외상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확정 시스템을 명확히 하고, 외상투자기업의 등기 및 외상투자의 정보 보고 제도를 세분화하였다.

중국은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 강도를 강화할 것이며, 외국 투자자와 외상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을 평등하게 보호할 것이다. 구체적인 규정을 아래와 같이 발췌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 시행규칙(발췌)

제 3 장 투자보호

제 22 조 외국투자자는 중국내에서의 출자, 이익, 자본소득, 자산처분소득, 취득한 지식재산권 사용 허가비용, 법에 따라 획득한 보상 또는 배상, 정산소득 등을 법에 따라 인민폐 또는 외화로 자유롭게 입금 및 송금이 가능하다. 하지만 임의의 기업 또는 개인은 화폐 종류, 액수, 입금과 송금의 횟수 등에 대한 제한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외상투자기업의 외국 국적을 지닌 직원과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 직원의 월급 수입과 기타 합법적인 수입은 법에 따라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다.

제 23 조 국가는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 강도를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법률집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지식재산권의 쾌속 협동 보호 체계의 설립을 추진하고, 지식재산권 분쟁의 다원화 해결 체계를 완비하고, 외국 투자자와 외상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을 평등하게 보호한다.

이외에, <시행규칙>에서는 기존 외상투자기업의 조직 형식 등과 관련된 과도기 배정을 세분화하였고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의 안정을 유지하였다. 홍콩·마카오·대만 투자의 법률적용을 명확히 하였고, 홍콩·마카오·대만 투자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였다. 또한 본 규칙을 위반하는 정부와 관련

부서 및 그 직원들의 행위에 대하여 대응한 법률책임을 규정하였다.

<시행규칙>을 실행한 후, <중화인민공화국 중외 합자경영기업법 시행규칙>, <중외 합자경영기업 합자경영 기한에 대한 임시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시행세칙>, <중화인민공화국 중외 합자경영기업법 시행세칙>을 동시에 폐지한다.

<반독점법> 대폭 개정: 인터넷 관련 내용 새로 추가

11년간 실행한 중국 <반독점법>은 처음으로 "대폭 개정"의 관건적인 타이밍을 맞이하게 되었다. 1월 2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홈페이지에서는 <반독점법> 개정 초안(공개적으로 의견 수렴)을 공포하였고 당일부터 1월 31일까지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인터넷 분야에서의 경영자 시장 지배적 지위 인정에 관한 요소를 제기

인터넷 새로운 경영 방식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 있다. 경영자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구비하는지에 대한 인정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근거 외에 의견수렴안에서는 "인터넷 분야에서 경영자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구비하는지에 대해 인정함에 있어서 인터넷 효과, 규모 경제, 잠금효과(lock in effect), 관련 데이터 파악 및 처리 능력 등 요소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특별히 언급하였다.

최근 몇년간, 인터넷 업계의 경쟁은 과열되어 가고, "양자택일"을 대표로 하는 제한거래행위도 날로 일반화되어 가며, 시장경쟁과 소비자 이익에 영향을 주었다. 사실, 2019년 9월 부터 정식으로 시행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금지 임시 규정> 등 3부의 반독점법 보조법규에서는 이미 인

터넷 분야에서 경영자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구비하는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의 기타 경우를 명확히 하였다.

중국에서 2008 년에 <반독점법>을 반포하여 실행할 때, 중국의 인터넷 경제는 아직 지금의 발전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11 년 후, <반독점법>을 수정할 때 “인터넷 분야에서 경영자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구비하는지에 대하여 인정함에 있어서 인터넷 효과, 규모 경제, 잠금효과(Lock in effect), 관련 데이터 파악 및 처리 능력 등 요소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등 인터넷 독점에 관련한 법률집행 내용을 새로 추가하였다. 이 조항은 주로 법률 근거 문제를 해결하였다. 비록 보조법규에서 이미 규정하였지만 상위법의 근거가 없었다. 지금은 큰법에서 명확히 규정하여 법률집행이 더욱 법률 근거가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 조항은 일정한 정도에서 인터넷 분야 독점에 관한 법률집행의 난이도를 증가하였다. 예를 들면 인터넷 효과, 규모 경제 등 명사에 대하여 어떻게 구체적으로 확정할 것인지 등이 있다.

시장 지배적 지위를 구비한 경영자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됨

<반독점법> 개정 초안 의견수렴안에서 규정한 독점행위에는 “경영자들이 독점협의를 이루는 것, 경영자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 경쟁효과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또는 배제하거나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경영자집중(Concentration of Undertakings)”이 포함된다. 경영자는 공정경쟁, 자발적 연합을 통하여 법에 따라 집결을 실행할 수 있고, 경영 규모를 확대하고, 시장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시장 지배적 지위를 구비한 경영자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의견수렴안에서는 경쟁 관계를 가지는 경영자들이 아래 독점협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금지하였다.

- 상품 가격을 고정하거나 변경하는 것,
- 상품 생산량 또는 판매량을 제한하는 것,
- 판매시장 또는 구매시장을 분할하는 것,
- 신기술, 신장치 획득을 제한 또는 신기술, 신제품 개발을 제한하는 것,
- 연합하여 거래를 배척하는 것,
- 국무원 반독점기관에서 인정한 기타 독점협약.

하지만 만약 경영자가 이루어진 협의는 "기술 개선, 신제품 연구개발을 위한 것", "제품 품질 제고, 원가 절감, 효율 증진, 제품 규격과 기준통일 또는 전문화 분업을 위한 것", "경제 불경기로 인하여 판매량이 심각하게 하락하거나 생산이 현저히 과잉된 것을 완화하기 위한 것" 등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경영자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구비하는 것에 해당하는 3 가지 경우

의견수렴안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구비한 경영자가 아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 불공평한 고가의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 또는 불공평한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것,
- 정당한 이유없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
-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를 거절하는 것,
-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 상대방에게 오직 자신과 거래하거나 자신이 지정한 경영자랑만 거래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
-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을 끼워팔거나 거래시 기타 불합리한 거래 조건을 추가하는 것 등.

경영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구비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 해당 경영자가 관련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 및 경쟁상황, 해당 경영자가 판매시장 또는 원재료 구매시장을 공제하는 능력, 해당 경영자의 재력과 기술 조건 등 요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하지만 아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경영자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구비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 한 경영자가 관련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1/2 에 도달한다,
- 두 경영자가 관련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총 2/3 에 도달한다,
- 세 경영자가 관련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총 3/4 에 도달한다.

반독점 신고 기준에 도달한 경영자는 사전에 집행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규정에 따라, 경영자집중이 공무원 반독점 집행기관에서 규정한 신고 기준에 도달하였을 경우, 경영자는 사전에 공무원 반독점 집행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집결을 실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공무원 반독점 집행기관은 경제 발전 수준, 업계 규모 등에 따라 신고 기준을 제정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적시에 사회에 공포하여야 한다. 경영자집중이 신고 기준에 도달하였지만 경영자가 법에 따라 집결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경영자가 신고 기준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경쟁효과를 배제하거나 제한 또는 배제하거나 제한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무원 반독점기관은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경영자가 본 법 규정을 위반하여 독점협의를 이루고 실행하였을 경우, 반독점 집행기관에서 위법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하고 위법소득을 압수하며 전년도 판매액의 1%이상 10%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전년도에 판매액이 없는 경영자 또는 이루어진 독점협의를 아직 실행하지 않았을 경우,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영자가 본 법 규정을 위반하여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였을 경우, 반독점 집행기관에서 위법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하고 위법소득을 압수하며 전년도 판매액의 1%이상 10%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